

의안번호	2209694
의 퇴 인	김성원 의원
회 답 일	2025. 4. 15.
추 계 번호	25F2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1조의17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개정안) 2030.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1조의17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사업승인이 고시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법인·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그 중 제3호 일부에 해당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표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법인·소득세 감면 내용

	감면대상	적용기한
제1호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025.12.31.
제2호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일몰없음
제3호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2025.12.31. －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제4호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	일몰없음
제5호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025.12.31.
제6호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일몰없음
제7호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일몰없음

	감면대상	적용기한
제8호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025.12.31.
제9호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025.12.31.
제10호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일몰없음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 개정안에 따른 법인·소득세수의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대상별 감면 실적 자료가 필요함
- 그러나 동 개정안에 따른 제3호 일부에 해당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해 구분된 감면실적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모든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실적으로, 국세청 확인 결과 감면대상별로 해당 감면실적을 구분하기는 어려움

[표 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1~2025년(전망)
(단위: 억원)

	2021 ¹⁾	2022	2023	2024 ²⁾	2025 ³⁾
감면액	8	49	72	36	38

주: 1) 기획재정부 확인 결과, 2021년의 경우 신청요건에 맞는 기업이 적어 감면실적이 평년에 비해 적음

2) 2024년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에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잠정치임

3) 2025년은 해당연도 조세감면 추정금액에 경제지표 등을 반영하여 추정한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동 개정안에 따른 제3호 일부에 해당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해 구분된 감면실적은 존재하지 않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